

중국

[판례 분석]
유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법상 성격

2026. 05. 06.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이를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지만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반드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소스 코드 자체는 공개되어 있지만 특정한 라이선스 조건에 의해 그 사용, 수정, 배포에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는 유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

1. 현황

중국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활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 범위와 그 침해 판단 기준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사용·수정·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GPL, MIT, Apache 등 다양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 조건이 규율됨. 이와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특징으로 인해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기 쉬움. 그러나 소스 코드는 공개되어 있지만 그 사용·수정·배포가 제한되어 있는 유사 오픈소스(pseudo-open source)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제한된 기준을 초과하는 무단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

본문에서는 유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를 통해 유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법상 보호 범위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서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5)琼73知民初字第80号
	2심	(2025)琼知民终15号

관할 법원	1심	하이난자유무역항 지식재산권법원(海南自由贸易港知识产权法院)	
	2심	하이난성 고급인민법원(海南省高级人民法院)	
당사자	A 회사		1심: 원고 2심: 피상소인
	B 회사		1심: 피고 2심: 상소인
핵심 쟁점	1심	1. A 회사의 원고적격 여부 2. B 회사가 A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3. B 회사의 법적 책임	
	2심	1. A 회사의 원고적격 여부 2. A 회사가 확보한 전자 데이터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3. B 회사가 A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4.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B 회사의 법적 책임	
판결 결과	1심	1. A 회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됨. 2. B 회사는 A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3. B 회사는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총 3,000위안을 배상해야 함.	
	2심	상소기각, 원심유지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법(著作权法) 제11조, 제54조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计算机软件保护条例)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4조 제(1)항 ·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著作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7조 		
최종 판결일	2026년 1월 4일		

(1) 사건 개요

A 회사는 오픈소스를 일부 사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구축 소프트웨어 V4.0.0(이하 "사건 소프트웨어"라 함)을 개발한 후 이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였음. 사건 소프트웨어는 V4.0.0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V4.4.8 버전에 이르렀으며, 그 소스 코드에는 A 회사의 명칭 및 저작권 성명이 포함되어 있음. A 회사는 사건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오픈소스버전"과 "전체 오픈소스 구입 버전"의 두 가지 유료 버전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음.

그 중 "라이선스 오픈소스버전"은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지만, 이를 사용하려면 라이선스(즉,

A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가 필요한 구독형 제품이고, "전체 오픈소스 구입버전"은 가격은 비싸지만 한 번 구매하면 라이선스나 다른 인증이 필요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

A 회사는 B 회사가 운영하는 X 웹사이트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이하 "분쟁 소프트웨어"라 함)의 파일 경로, 파일명, MD5 해시값 등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고도로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B 회사가 사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수정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A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B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본 안건에서 B 회사가 사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복제·수정하여 사용한 행위가 A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A 회사의 주장에 대해 B 회사는 사건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므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음.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① A 회사의 원고적격 여부
- ② B 회사의 저작권 침해 여부
- ③ B 회사의 법적 책임

(3) 법원의 판단

1) 원고적격

<저작권법> 제11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제9조에 의하면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속함. 소프트웨어에 서명이 있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개발자로 추정되며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저작권자로 인정함. 1심 법원은 A 회사가 제출한 사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등록증에 대해 B 회사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A 회사를 사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 인정하였음. 소프트웨어에 다수의 버전이 존재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A 회사가 제출한 V4.4.8 버전의 소스 코드에 A 회사의 서명 및 저작권 성명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A 회사가 사건 소프트웨어 V4.4.8 버전 저작권자임을 인정하였음.

B 회사는 2심에서 A 회사가 제3자 회사에게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 및 유지권 권리를 양도하여 소송 주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A 회사가 2020년 7월 22일부터 2021년 10월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3자 회사와 <협력개발 허가계약>을 체결하여 사건 소프트웨어의 유지권 권리를 해당 회사에 이용허락한 사실이 있으나, 2021년 10월에 양사가 <협력개발 해제협약>을 체결하여 합작 관계를 종료하고, A 회사가 해당 권리를 다시 회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A 회사는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및 유지권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음.

2) 저작권 침해 여부

a. 접근 가능성 및 실질적 유사성

사건 소프트웨어는 두 버전 모두 A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으로서 B 회사가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인정됨. 한편 실질적 유사성에 관해서는 A 회사가 클라우드 디지털 증거수집 플랫폼을 통해 수행한 비교 결과를 심사하여 X 웹사이트에 설치된 분쟁 소프트웨어가 사건 소프트웨어를 기초로 편집, 완성된 것이며, 양자가 실질적 유사성을 구성한다고 인정하였음. 구체적으로 분쟁 소프트웨어와 사건 소프트웨어 사이에 동일한 경로 갯수가 1,287개이고, 동일한 파일명 갯수가 6,455개이며 MD5 해시값¹⁾이 동일한 파일 갯수가 2,812개로서 분쟁 소프트웨어가 사건 소프트웨어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됨. 또한 분쟁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에서 A 회사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들이 검색된 사실 역시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함을 증명함.

b. 침해 행위의 존재 여부

한편 B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학습, 연구 목적으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B 회사가 상업 활동을 경영 범위로 하는 사업 주체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B 회사의 등록 도메인 사이트에 분쟁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1개의 상용 미니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B 회사가 분쟁 소프트웨어를 학습, 연구가 아닌 상업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됨. 이에 따라 B 회사가 A 회사의 허가 없이 분쟁 소프트웨어를 X 웹사이트에 설치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A 회사의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권, 수정권 등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됨.

c. B 회사가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 여부

B 회사는 사건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음.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 회사의 항변을 기각하였음. 첫째, A 회사는 사건 소프트웨어가 완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라이선스 오픈소스버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설령 사건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A 회사는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이 그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둘째, A 회사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B 회사가 사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법률관계에 속하므로 본 안건에서 A 회사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 여부는 저작권 침해 행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 외에도 B 회사는 사건 소프트웨어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임을 증명하지 못했음.

3) 법적 책임

<저작권법> 제54조에 의하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권리자가 입은

1) MD5 해시값은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16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한 MD5 해시값을 가짐.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의 부당이득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권리자의 실제 손실이나 침해자의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저작권 사용료를 참고하여 배상할 수 있음. 실제 손실, 부당이득, 저작권 사용료 모두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침해 행위의 정황에 따라 500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법정 배상을 판결할 수 있음.

본 안건에서 A 회사의 실제 손실 및 B 회사의 부당이득을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A 회사의 사건 소프트웨어 판매 가격, 사용 범위, B 회사의 침해에 대한 주관적 고의 및 A 회사의 합리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확정함. 구체적으로 B 회사가 분쟁 소프트웨어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여 B 회사가 사건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점, A 회사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권리 기초로 소송을 통해 이미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점, A 회사가 본 안건에서 합리적 비용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디지털 증거수집 방식을 사용하여 증거수집 비용이 비교적 낮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 금액을 1,500위안으로 확정함.

또한 B 회사가 분쟁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1개의 상용 미니프로그램을 개발한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 경제적 손실 1,000위안을 더하여 A 회사의 총 경제적 손실을 2,500위안으로 확정하고 합리적 비용 500위안을 합하여 최종 배상 금액을 3,000위안으로 판결함.

3. 판례분석

본문의 판례에서 B 회사는 사건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임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성립을 부정함. 이에 대해 법원은 소스 코드가 공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법상 성질과 그 보호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음. 분석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유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구별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봄.

1) 유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a. 유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법상 성격

유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전통적인 오픈소스 개념이 확장되면서 등장한 현대적 소프트웨어 유통 형태로 그 법적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저작권 분쟁을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수정·배포할 수 있다²⁾는 점에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됨. 그러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조건(라이선스)에 다양한 제한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유형이 바로 유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임.

유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핵심적인 특징은 소스 코드의 공개와 그 사용에 대한 자유의 분

2) OSI(Open Source Initiative)가 정의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Open Source Definition, OSD)의 10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가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될 수 있음을 보장함. (<https://opensource.org/osd>)

리임. 즉, 소스 코드는 공개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사용·수정·배포는 일정한 라이선스 또는 권리자의 허락에 종속됨. 본문의 판례에서도 사건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라이선스 인증이 필요하고 사용 범위 역시 제한되는 구독형 모델인 "라이선스 오픈소스버전"과 일회성 비용을 지불하면 인증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체 오픈소스 구입버전"의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누어 유료로 판매되었음.

특히 "전체 오픈소스 구입버전"의 경우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가까운 형태로 보일 수 있으나 이 두 버전 모두 엄밀한 의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는 구별되는 유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해당함. 먼저 "라이선스 오픈소스버전"은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위해 별도의 허가와 인증을 요구하고 사용 범위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오픈소스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로운 사용과 배포가 제한됨. 이는 단순히 코드가 공개된 독점 소프트웨어에 불과하며 진정한 의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는 형식적 유사성만을 가질 뿐임. 한편 "전체 오픈소스 구입버전"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버전의 사건 소프트웨어 역시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이 구매자에게만 한정되고 제3자에 대한 재배포나 수정본 배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이는 오픈소스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역시 진정한 의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보기는 어려움. 결국 두 버전 모두 소스 코드는 공개되어 있으나 그 사용 권한은 제한된다는 점에서 유사 오픈소스라는 동일한 법적 성질을 공유함. 이에 관하여 법원은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가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포기를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음. 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즉 "공개된 코드는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부정하는 법리임.

b. 유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판단

법원은 본문의 판례에서 "A 회사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별도의 법률 관계에 속하며 본 안건의 침해 행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두 가지 법률 문제를 명확히 구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즉, 타인의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수정하여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인 반면 저작권자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예를 들어 소스코드 공개·수정 사항 고지 등)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한 민법상 계약 이행의 문제임. 법원은 이 두 가지 문제가 법적으로 독립된 것임을 확인하고, 후자의 문제가 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음.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회사의 직원이 근무하던 전 회사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발생한 사례³⁾에서 최고인민 법원은 "원고의 소프트웨어가 아직 오픈소스로 공개되지 않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그 소프트웨어가 GPLv2(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 협약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

3) (2021)最高法知民终51号

는 상황에서 피고가 GPLv2 협약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본인이 GPLv2 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유하는지 여부는 서로 독립된 두 가지 법률 문제이므로 양자를 혼동하여 개발자가 독창적인 기여를 통해 법에 따라 향유하는 저작권을 부당하게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함. 즉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제3자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

한편 유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는 단순한 유사성 판단을 넘어서 합법적인 라이선스 취득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함. 본문의 판례에서 B 회사는 사건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B 회사가 소프트웨어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배척하였음. 즉, 비록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가 특정 라이선스 하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

결국 본문의 판례에서 법원은 "유사 오픈소스"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소스 코드의 공개가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조건부로 공개된 저작권 보호 대상"인 경우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사용이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음. 이는 오픈소스와 유사 오픈소스를 구별하지 못한 채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이용에 있어 라이선스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음.

2) 소프트웨어 실질적 유사성 판단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은 침해 소프트웨어와 권리 소프트웨어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소스 코드 또는 목적코드의 비교를 통해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임.

본문의 판례에서 법원은 A 회사가 클라우드 디지털 증거수집 플랫폼을 통해 획득한 전자 데이터 비교 결과를 기초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였는데, 구체적인 비교 방법은 분쟁 소프트웨어와 사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파일 경로, 파일명, MD5 해시값의 세 가지 기준으로 비교하였고 그 결과 분쟁 소프트웨어가 사건 소프트웨어의 파일 구조와 소스코드를 대부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두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를 직접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MD5 해시값, 파일 경로, 저작권자 표시 등의 요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였다는 것임. MD5 해시값은 파일의 내용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고유한 값으로서 두 파일의 MD5 해시값이 동일하다면 두 파일의 내용이 완전히 동일함을 의미함. 따라서 MD5 해시값이 동일한 파일이 2,812개에 달한다는 사실은 분쟁 소프트웨어의 상당 부분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복제한 것임을 시사함. 또한 경로와 파일명의 동일성은 단순히 개별 파일의 복제를 넘어 소프트웨어의 전체적인 구조가 그대로 복제되었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분쟁 소프트웨어가 사건 소프트웨어를 기초로 편집·완성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됨. 그 외에도 법원은 분쟁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에서 A 회사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들이 검색된 사실도 실질적 유사성 인정의 근거로 활용하였음. 이와 같이 피소침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에 권리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명칭 또는 그 약칭이 존재하는 것은 피소침해 소프트웨어가 권리 소프트웨어를 기초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됨.

이를 종합하면 소프트웨어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를 직접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파일 경로 및 이름 비교, MD5 해시 값 비교, 코드 내 고유 표시(저작권자 이름, 저작권 성명 등)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함.

4. 시사점

본문의 판례는 단순히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라이선스 조건과 이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만일 유사 오픈소스와 같이 외형상 오픈소스와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용허락이 필요한 구조를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소프트웨어의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한계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2025)琼知民终15号
 (2021)最高法知民终51号